

여신거래약정서 (기업용)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귀중

20 년 월 일

본 인 _____ 인
주 소 _____

연대보증인 _____ 인
주 소 _____

연대보증인 _____ 인
주 소 _____

본인 및 연대보증인은 주식회사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합니다)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제1조 [거래조건]

①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조건이 수 개로 되어 있는 경우 회사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에 “V”표시합니다.)

여신과목 (여신종류)		거래구분	<input type="checkbox"/> 한도거래 <input type="checkbox"/> 개별거래
여신(한도)금액	금		원
여신개시일	20 년 월 일	여신기간 만료일	20 년 월 일
이자율 등	<input type="checkbox"/> 고정	여신기간만료일까지 연 %	
	<input type="checkbox"/> 변동	<input type="checkbox"/> 기준금리() + ()% <input type="checkbox"/> 기타 ()	
지연배상금율	대출 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를 더하여 최고 연()%이내로 적용 합니다.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지연배상금율 이상인 경우에는 대출이자율에 2%를 더하여 적용하기로 합니다.		
연체가산금리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에는 ()%, 1개월 초과 3개월이내에는 ()%,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이자·지연배상금 계산방법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미도래대출(상환)원금의 ()%
여신실행 방 법	<input type="checkbox"/> 여신개시일에 전액 실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증빙서류나 현물 등에 의하여 회사가 자금용도와 필요금액을 확인하고 분할실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본인의 청구가 있는 대로 실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기타()
상환방법	<input type="checkbox"/>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여신개시일로부터 ()년 ()개월 동안 거치하고, ()년 ()월 ()일부터 매 ()개월 마다 분할상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기타 ()
이자 지급 시기 및 방법	<input type="checkbox"/> 최초이자는 여신개시일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에 선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어음기일 전일까지 선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최초이자는 여신개시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 익일부터 ()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분할상환원금 상환일에 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여신기간 만료일에 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회사가 정한 매월 결산일에 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기타 ()
보증채무 최고액	금 원
자금의 용도	

※ 은행영업시간 마감 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한도거래약정의 경우 이자율 및 이자와 관련된 사항은 제1항에 기재되지 않은 한 한도거래약정 당시에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하며, 한도거래약정 등에 따라 개별거래약정 또는 건별거래약정이 체결될 경우 이자율 및 이자와 관련된 사항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거래조건에도 불구하고 건별거래약정, 한도거래약정 또는 한도거래약정에 따른 개별거래약정의 각 약정만기일의 연장 내지 갱신 가능 여부에 관하여는 쌍방의 서면합의에 따라 정하기로 합니다.

④ 한도거래약정에 기초하여 개별거래약정 등이 체결되었다가 대출기간 만료를 이유로 대출기간을 연장하거나 갱신할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이자율, 지연배상금율, 수수료 등의 율이 변경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2조 [지연배상금]

① 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여신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기한전의 채무변제 의무)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여신거래기본약관 제12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채무 발생 포함)에는,

그때부터 여신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산출하여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3조 [차용총액 확정 및 분할상환기일표 통지]

- ① 분할실행하는 여신의 경우, 채무총액은 최종의 실행 후에 확정되며, 확정방법은 분할 상환기일표 및 영수증 기타 증빙자료에 의합니다.
- ② 분할상환 여신의 경우, 회사는 확정된 채무총액에 대한 분할상환기일표를 작성하여 채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4조 [감액·정지]

- ① 한도거래 및 분할 실행하는 여신의 경우,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또는 본인의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여신거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회사는 통지에 의하여 제1조의 여신(한도)금액을 줄이거나, 거래기간에 불구하고 여신실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은 감액으로 말미암은 한도초과 금액은 곧 갚기로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 여신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회사는 곧 감액, 정지를 해소하기로 합니다.

제5조 [비용의 부담]

- ① 본인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취급수수료
 2. 본인의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제증명·확인서 등의 소요비용
 3. 법령상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된 비용
- ② 인지세는 본인과 회사가 각 50%씩 부담하기로 합니다.
- ③ 근저당설정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담하기로 합니다.
 1.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수수료 발생 시 회사 부담
 2. 국민주택채권매입비 발생시 본인 부담
 3. 기타 비용으로 부담주체가 불분명한 비용 발생시 본인 및 회사가 각 50%씩 부담
- ④ 근저당말소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 ⑤ 채무불이행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비용의 부담)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6조 [담보의 제공]

- ① 회사는 약정서상 본인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본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 및 담보를 제공하는 담보제공자는 회사가 제시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즉시 담보를 제공하기로 합니다.
- ② 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동 담보는 대출개시일 전에 회사에 제공하며, 담보물에 대하여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출개시일로부터 대출완료일까지 회사가 동의하는 종류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금청구권에 회사를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합니다. 동 보험가입은 회사가 대행할 수 있으며 보험료 등 비용부담의 주체는 쌍방의 합의

에 따라 결정하기로 합니다.

제7조 [연대보증]

- ① 금융회사는 채무자와 여신거래를 할 경우 연대보증인(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이와 유사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1. 법인에 대한 여신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자 중 1인에 한함. 단, 라목의 경우 2인이상 가능하다. 최대주주
 - 나. 지분 30%이상 대주주, 과점주주 이사
 - 다. 본인과 배우자, 4촌이내 혈족·인척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여 30%이상인 주주
 - 라.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단, 고용임원 제외)
 - 마. 무한책임사원
- ③ 제2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대보증 한도액은 해당 연대보증인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④ 연대보증인은 이 약정의 각 조항을 승인하고, 본인이 이 약정 및 이 약정에 부속하는 약정에 의하여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본인과 연대하여 보증하며, 그 이행에 관하여 이 약정 및 이 약정에 부속하는 약정과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8조 [대출금의 기한도래 전 상환]

- ① 본인은 대출기간 중도에 잔여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상환일 현재까지 아직 상환하지 않은 금액(당월 대출금, 연체금 등)을 모두 상환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본인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제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다만,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8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금융회사가 기한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합니다.
- ③ 제2항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대출 사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9조 [자료의 제출 등]

본인은 회사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20조 및 제22조에 근거하여 여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타 자료를 회사의 요청이 있는 대로 즉시 제출하기로 합니다.

제10조 [권리의 양도]

- ① 회사는 이 약정상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채권양도 및 담보제공사실을 사전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합니다.
- ② 본인은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 약정상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금리인하 요구권]

- ① 본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개선 등 금리인하 요청요건에 해당하는 본인은 회사가 규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서식 및 확인서류를 제출 하는 등 회사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서면에 의하여

금리 인하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융회사는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시 그 결과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12조 [이 약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에 관하여는 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제13조 [별도협의]

이 약정과 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이 약정서 사 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 였습니다.	본인	(인)
	연대보증인	(인)
	연대보증인	(인)

- 특 약 사 항 -